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0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9.

발의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구자근

김기웅 · 엄태영 · 박형수

유용원 · 곽규택 · 조은희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·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일몰 종료 시 영농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, 농가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 이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·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”를 “제5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